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13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☐ 제안이유

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 장관 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가.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 함.(안 제10조)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세 무 과
입 안 자	세 무 과 장	석 명 범 ☎ 940-4220
	시 세 담 당	이 용 석 ☎ 940-4238
	담 당 자	징 재 현 ☎ 940-4231

신구조문대비

현행	개정안
제10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② <신설>	제10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중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한다.

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 함. (안 제10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문 화 재 보 호 법

제42조 (문화재의 등록) ①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문화재(이하 “등록문화재”라 한다)의 등록기준·절차 및 등록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1. 3. 28]

지 방 세 법

제9조 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·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1. 7. 1부터 시행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%를 경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기 내용타당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